

광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6142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61429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21. 7. 7 선고 2021가소34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포트너스

담당변호사 손진홍, 송길용, 윤주석, 황용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한진

변론 종결2022. 5. 13.

판결 선고2022. 5. 27.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21. 7. 7. 선고 2021가소 34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2.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20. 7. 29. 00:42경 여주시 좌수영로 239 소재 진남체육경기장 입구 삼거리(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교차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통과한 직후, 위 도로 1차로(교차로 전 2차로)에서 위 도로의 2차로(교차로 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에서 위 도로 2차로(교차로 전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C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의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C위원회는 2021. 1.

1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에 탑승한 D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584,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21. 1. 21.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결정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으로 116,800원(= 584,000원 × 20%)을 지급한 후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21.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편도 1차로(교차로 전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교차로 전 3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원고 차량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결정한 C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

가)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교차로 전 3차로)에서 편도 1차로(교차로 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로가 감소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원고 차량 역시 본선으로 합류하던 피고 차량의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 역시 차로를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편도 3차로로 피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여수시 좌수영로 239 소재 진남체육경기장 입구 삼거리가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교차로라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는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는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는 피고 차량은 1차로로, 원고 차량은 2차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을 차로가 감소하는 도로에서 본선에 합류하려는 차량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의 왼쪽 뒤편에서 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의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우측으로 피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다만 원고는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116,800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1. 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중 2021.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2. 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C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는 점(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233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C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다음날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체책임만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2.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영아

판사김성흠

판사김효진